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2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허성무 · 임미애 · 송재봉
안호영 · 조인철 · 김상욱
김태선 · 민홍철 · 구자근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가목 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에 있는 내국법인의 경
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400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56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가목 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6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